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축소방안
- 건설일용직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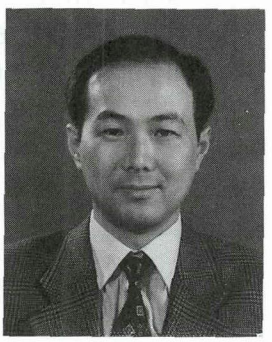

元 鍾 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현황

금년에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한 결과 실제 적용대상자의 54.5%인 481만 3천명이 납부예외자로 신청하였다. 납부예외자 중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는 191만 3천명이며, 전국의 건설일용직의 수를 150만명으로 추정할 때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 납부예외자의 상당수가 건설일용직일 가능성이 크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연금액산정 과정에서 누락되며, 장기간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을 경우 연금액이 줄거나 거의 없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 납부예외자 중 건설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유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표 1. 납부예외자 구성현황

(단위: 천명, %)

유형	내 용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 중 납부예외자 비중
		인원	구성비	
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	853	10	17
Ⅱ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없는 자영자(과세특례자)	1,305	15	28
Ⅲ	구멍가게·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영세상인	2,309	26	49
Ⅳ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1,886	21	66
Ⅴ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	2,485	28	77
합계		8,838	10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신고상황 분석 및 향후 대책』, 1999.

2.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동향 및 고용특성

가. 고용동향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9년 2월에 8.7%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3월말 현재 8.1%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IMF 구제금융이전(1997년) 실업률이 2.8%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실업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업인구 중 1년 미만의 근로경력을 갖고 있는 전직실업자(125만 9천명) 중 임시직 종사 실업자가 31.5%, 그리고 일용직 실업자가 35.4%를 차지하고 있어 임시·일용직의 실업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의 증감에 있어서는 건설업이 1997년에 비해 42만 7천명이 감소하여(−21.3%)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현황만으로도 건설업 종사자의 실업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실업률에서 취업자를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등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날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

전국 건설일용직의 수를 150만명으로 추정할 때 납부예외자로 신고한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191만 3천명의 상당수가 건설일용직일 가능성이 크다.

로 구분함에 따라 건설일용직의 근로특성상 통계청의 실업통계에는 이들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사무직 또는 기술직만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국의 건설일용직을 150만으로 추산할 때 통계청의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일용직 실업자수는 105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종사 임시·일용직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에서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납부예외자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IMF 구제금융후 높은 실업률과 건설업종사 임시·일용직의 특수한 근로형태로 인해 이들은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이다.

나. 고용특성

건설인력은 기술관리인력, 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인력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생산기능인력은 독립십장, 기능장, 기능공으로, 그리고 단순노무인력은 직영작업반장, 잡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설일용직은 생산기능인력과 단순노무직을 합한 것이며, 이들의 노동력 투입구조는 고용업체나 공사종류에 따라 복잡하나 대부분 독립십장에게 해당 작업의 공사기간 동안 고용되어 작업이 수행된다. 대규모 토목시공현장 등에서는 일반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된 작업반장과 잡부가 있으며, 전기·설비·창호·석공·유리·타일 등의 소규모 자재업체에 고용된 기능공 등이 있다.

기능인력은 주로 작업조, 직영체제, 일일노동시장, 노동조합을 통하여 고용된다. 작업조를 통한 고용은 독립십장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노동력 투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일일노동시장은 소위 인력시장으로 불리는 곳으로 일감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십장들이 긴급히 일용직을 찾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의 특성상 건설일용직은 일정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사업장위주의 각종 사회보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3. 건설일용직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현재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제조건은 일정기간 이상의 지속적인 고용과 이에 대한 사업주의 기록관리이다.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를 통한 피보험자관리는 비정규근로자, 특히 사업장 이동이 심한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4대사회보험 중 산재보험만이 건설일용직을 임금근로자의 자격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

업장위주의 자격관리로 인해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임시·일용직근로자를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있어 부담의 형평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 사회보험의 가입기준에 의하면 상당수의 일용직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해야 하나 행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제외 규정

사회보험	적용제외 규정
고용보험	-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 미만의 공사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 고용기간에 의한 제외규정 없음.
의료보험 (직장)	- 공사규모에 의한 제외규정 없음. - 2월이내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직장)	- 공사규모에 의한 제외규정 없음. - 3월이내의 일용·기한부 근로자

자료: 실업대책기획평가단 정책토론회자료, 1999.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은 IMF 구제금융후의 높은 실업률과 특수한 근로형태로 인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의료보험은 2개월 이상, 그리고 연금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사업장근로자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적용기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급속히 적용확대가 이루어진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제도도입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 종사자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외규정 이외에도 개인자격면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그리고 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18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확대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확대적용 대상으로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고, 개인자격면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일용직의 경우 확대적용의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휴업 또는 폐업중인 건설업 종사자와 적용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4. 건설일용근로자의 경력관리

가. 독립십장 영업의 양성화

건설일용직의 노동력투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독립십장에 의한 고용형태이다. 고용구조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나 독립십장에게 고용되어 당해 작업기간 동안 노무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회사와 건설노동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립십장은 하청단계 말단의 노무하도급 계약자로서 자영적 성격과 피용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독립십장의 수입 또한 자영적 성격의 이윤과 피용적 성격의 임금을 동시에 지닌다. 수입은 하도급액에서 동원된 노동력의 임금, 간식비, 술대접비 및 여타 교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 불안정하다.

독립십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기능, 폭 넓은 인간관계 및 어느 정도의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일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회사 또는 청부업자(소규모 주택 등 신축공사업자)와의 인간적 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휘하의 기능공의 확보를 위해서는 신용과 인간적 유대가 유지되어야 한다. 많은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고 있는 독립십장은 여러 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각 현장별로 능력을 인정받는 세와(기능장급)와 총무를 고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독립십장은 건설일용직의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업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현재 독립십장의 노무하도급을 건설업법상 재하도급과 별개로 간주하여 건설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일정한 요건(기능정도, 경력정도, 동원인부수)을 갖춘 독립십장을 등록하게 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방안이

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독립십장은 건설공사 작업수행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고, 현재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업종사 임시·일용직의 사회보험가입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제도의 확대

건설일용직은 근로의 특성상 일정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사업장위주의 각종 사회보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독립십장의 사업장 등록과 함께 임시·일용직의 경력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사업장가입자 형태의 사회보험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건설일용직의 경력관리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가 1998년 1월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관리하는 퇴직공제수첩제도이다. 건설일용직의 퇴직금지급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일용직 중 1999년 4월 현재 수첩소지자는 7,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설일용직은 독립십장의 사업장 등록과 함께 임시·일용직의 경력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사업장가입자 형태의 사회보험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설립목적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대부분 일용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일용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복지제도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산업보다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퇴직공제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다소나마 퇴직후 생활의 안정과 소속감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단체가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97년 12월에 설립한 특수법인으로서 설립·운영·감독 등은 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약 150만명의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제도가입 확대, 피공제자 경력관리, 공제부금관리 등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는 공제회조직으로 운영하고, 공제계약체결, 공제부금수납, 복지수첩발급 등의 집행업무는 기존 조직인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각 지점(출장소)에서 대행하고 있다.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사업내용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자에게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공제회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회에 공제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당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설업계 전체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설근로자가 언제 어는 현장에서 근로하든지 공제계약사업주에 고용되었다면 일한 일수분의 공제부금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임의가입형태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1/2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등은 의무가입대상공사로 정하고 있다.

의무가입공사의 공제부금은 공사원가에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의무가입대상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금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 데 소용되는 금액을 명시토록 하여 공제부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이 지원된다.

또한 공제부금의 납부실적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에 반영되므로 퇴직공제계약사업주는 모든 공사의 수주에 유리하고, 특히 공공 공사의 수주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부금은 세법상 공과금 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손비로 비과세 처리된다.

3) 공제회 가입방법 및 혜택수준

공제부금의 납부는 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식이며, 공제계약이 체결된 후 사업주는 가까운 대행기관에서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면 공제증지를 구입할 수 있다. 공제증지는 1일권과 10일권 두 종류가 있으며, 공제부금은 근로 1일에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 초기단계인 현재는 공제부금을 2,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제증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근로자가 그 임금지급시 근로일수와 같은 수량을 복지수첩에 붙이고 사업주는 공제계약신청시에 등록한 인장으로 직접 소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공제금의 산정은 청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금액은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과 고용보험지원금을 합한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자는 납부일수 21일을 1월로 보아 월단위 복리로 산정하며 현재는 10%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수첩소지자는 퇴직공제금 이 외에도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추천되며, 적립된 퇴직공제금의 범위내에서 생활자금대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일용직에 대한 경력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장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근로자 신분인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의 직종 등 경력사항을 관리하여 경력에 의한 기능사 인정제도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4) 공제조합과 사회보험조직간의 연계

건설업 종사 임시·일용직에 대한 경력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징수 및 자격관리업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퇴직공제조합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건설근로자복지수첩제도가 정착되어 사회보험의 적용이 용이해지기 위해서는 당연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5. 건설일용직의 사업장가입에 따른 신고소득 변화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연금확대 과정에서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도시 저소득계층으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우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대다수가 납부예외자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4월 15일 소득신고 마감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가입자의 평균신고소득은 84만원으로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44만원에 비해 60만원이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가입자와 도시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자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경력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장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근로자 신분인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3〉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는 경우 각 계층별 평균신고소득액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가입자 중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29만원이며, 도시지역 자영자의 평균신고소득은 90만원이 되어 두 집단간 평균소득격차는 39만원으로 좁혀진다. 또한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77%가 납부예외자로 신고되었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건설일용직이고 앞에서 제시한 경력관리가 실현되는 경우 소득신고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전문직 자영자에 대한 신고소득 상향조정과 함께 저소득층 임시직·일용직 납부

표 3. 소득신고대상유형별 평균신고소득액

(단위: 천명, 천원)

구 분	현행신고체계				IV, V집단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가입자수		평균신고소득		가입자수		평균신고소득	
사업장	4,917		1,440		6,115		1,290	
도시지역 자영자	I: 707	4,025	I: 1,201	842	I: 707	2,827	I: 1,201	900
	II: 939		II: 870		II: 939		II: 870	
	III: 1,181		III: 745		III: 1,181		III: 745	
	IV: 638		IV: 750					
	V: 560		V: 642					
농어촌지역	2,090		635		2,090		635	

주: I 유형: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
II유형: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없는 자영자(과세특례자)
III유형: 구멍가게·노점상 등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영세상인
IV유형: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V유형: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월별통계』, 1999.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신고상황 분석·평가 및 향후대책』, 1999.

예외자의 소득신고가 늘어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자간의 신고소득격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임시·일용직, 특히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납부예외자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력수첩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건설일용직에 대한 경력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소득있는 납부예외자들을 소득신고자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건설일용직에 해당하는 납부예외자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력수첩제도의 확대와 납부예외자들을 소득신고자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당 또는 임금수준이 기능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집단에 있어서도 정확한 소득파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달청의 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건설일용직의 1일 일당은 보통인부 33,000원에서

형틀목공 62,000원 등 다양하므로 이들간의 소득격차도 클 수가 있다.

건설일용직은 직종에 따른 임금 파악이 가능하므로 월간 근로일수가 이들의 소득을 결정한다. 건설일용직의 근로일수는 건설경기에 크게 좌우되고 개인간의 격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개발연구원이 1994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설일용직의 근로일수는 일년 중 가장 일이 많은 3개월간 평균 근로일수는 월 27일이며, 가장 한가한 3개월 평균근로일수는 월 18일로 조사되었다. 물론 1994년은 IMF 이전이므로 건설경기가 지금과 같이 침체된 상황이 아니므로 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크다고 본다. 건설경기가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 건설일용직의 근로일수는 1994년 조사당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소득신고에서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들의 평균신고소득이 64만원이므로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당 33,000원인 보통인부가 평균 한 달에 18일 일한 소득 59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이 있는 건설일용직을 납부예외자에서 소득신고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일용직에 대한 소득신고는 직종과 근로일수를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득신고당시 일이 없는 경우 실직자로 신고하기 쉬우므로 연간 평균근로일수와 직종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신고양식이 필요하다. 근로일수의 경우는 경력관리가 되지 않는 한 근로자 자신밖에 몰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하게 근로일수를 기입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일용직은 재해발생시 높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산재보험의 보상방법은 근로일수로 근로기간 동안 받은 총임금을 나누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일당수준은 어느 정도 노출되나 근로일수는 해당 현장에서의 근로일수만을 계산하므로 연간 평균근로일수는 고려되지 않는다. 산재보상방식에서 전년도 평균근로일수를 감안하여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소득이 있는 납부예외자의 축소 및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산재보험에서 적용하는 일당 또는 임금을 국민연금에 신고할 소득의 기준으로 하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전년도 평균근로일수도 소득신고시 기입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건설일용직에 대해 정확한 소득신고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